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의안번호	702
------	-----

제출년월일 : 2001. 7. 2.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안이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으로써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이용자의 범위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으로 함. (안 제2조)
- 나.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복지법인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다. 이용료의 징수기준 및 납부방법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 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 도 사회65230-11637 (2000. 7. 31) 휠체어택시 제도확대시행 계획시달
- 도 사회65230-12729 (2000. 11. 27) 휠체어택시 운영표준안

4. 본문 : 불 입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0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 이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거동불편노인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3. 이용료 :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휠체어택시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이용료의 징수방법) ①이용료의 납부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별표2”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용 요 금 표

거리 (권역별)	이용시간	요금
20km (왕복 40km) 이내	3시간 미만	3,000원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000원
21~40km (왕복 80km) 이내	3시간 미만	5,000원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7,000원
41~50km (왕복 100km) 이내	5시간 이상	10,000원

[별표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대상자

장애종류	면제대상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상지장애 2급1호 이상 · 하지장애 4급4호 이상 2. 지체기능장애 · 상지장애 3급1호 이상 · 하지장애 3급5호 이상 · 척추장애 5급8호 이상
뇌병변장애	1. 3급1호 장애 이상
시각장애	1. 3급2호 장애 이상
청각장애	1. 청력장애 3급 이상 2. 평형기능장애 4급 이상
언어장애	1. 언어장애 3급 이상
정신지체장애	1. 1급 장애 이상
정신장애	1. 3급 장애 이상
발달장애	1. 2급 장애 이상
신장장애	1. 2급 장애 이상
심장장애	1. 2급 장애 이상